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경 과

가. 발 의 자 : 김춘곤 의원 (찬성자 39명)

나. 의안번호 : 제 1679 호

다. 발의일자 : 2024. 4. 2.

라. 회부일자 : 2024. 4. 8.

## 2.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서 ‘폭염’은 공기의 온도만 고려한 “일 최고기온”을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기상청은 폭염특보를 발령함에 있어 “일 최고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현실성 있게 정비하는 한편, 기타 조례의 자구 수정 및 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 가. 폭염의 정의 중에서 “일 최고기온”을 “일 최고 체감온도”로 변경함.(안 제2조제1호)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나. 예산조치 : 원안(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24.4.12.~4.16.) 결과 : 의견없음

##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2조제1호에 “폭염”을 ‘일 최고기온’ 기반으로 정의하고 있던 것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로 변경하고, 그 외에 현행 제2조제4호에 따른 폭염저감시설을 규정한 [별표]의 신설과 기타 약어 규정 등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임.

[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폭염”이란 일 <u>최고기온</u> 이 섭씨 33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 <u>최고 체감온도</u> 가 ----- -----.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u>시장·구청장</u> 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2. ----- ----- <u>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 <u>구청장</u> -----.
3. “폭염취약계층”이란 「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u> 」(이하 “ <u>법</u> ”이라 한다)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3. ----- 「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u> 」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5조(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 <u>자연재해대책법</u> 」(이하 “ <u>법</u>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폭염 대응 종합대책(이하 “ <u>종합대책</u>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① ----- -- 「 <u>자연재해대책법</u>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별표] <u>폭염저감시설</u> (제2조제4호 관련) (생략)

- 폭염을 체감온도 기반으로 정의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체감온도는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을 감안해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여름철 낮은 습도에서 덜 덥게 느끼고, 높은 습도에서 더 덥게 느끼는 것을 반영한 온도로서
- 기상청은 일 최고 체감온도<sup>1)</sup>를 기준으로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폭염경보”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폭염에 대한 각종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
- 이 같은 기상청의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주의보, 경보)체제는 작년 5월 15일부터 변경 적용된 것으로, 기존에 폭염특보를 단순히 기온만을 고려하던 것에서 습도까지 고려해 실제 사람이 느끼는 체감온도 기반으로 운영하여 폭염 피해를 효과적으로 저감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음.

[표] 기상청 폭염특보 기준 개선('23.5.15.)

구 분	주의보	경보
기 준	일 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1) 기상청 제공 체감온도표

기상청 체감온도 표		<span style="background-color: #d9ead3;">관심</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 #fff2cc;">주의(주의보)</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 #f4cccc;">경고(경보)</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 #e41e2c;">위험</span>													
습도 \ 기온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0	26.6	27.6	28.5	29.5	30.4	31.4	32.4	33.3	34.3	35.3	36.2	37.2	38.2		
45	27.1	28.1	29.0	30.0	31.0	32.0	32.9	33.9	34.9	35.9	36.9	37.8	38.8		
50	27.6	28.6	29.5	30.5	31.5	32.5	33.5	34.5	35.4	36.4	37.4	38.4	39.4		
55	28.0	29.0	30.0	31.0	32.0	33.0	34.0	35.0	36.0	37.0	38.0	39.0	40.0		
60	28.4	29.4	30.4	31.4	32.4	33.5	34.5	35.5	36.5	37.5	38.5	39.5	40.5		
65	28.9	29.9	30.9	31.9	32.9	33.9	34.9	35.9	36.9	38.0	39.0	40.0	41.0		
70	29.3	30.3	31.3	32.3	33.3	34.3	35.4	36.4	37.4	38.4	39.5	40.5	41.5		
75	29.7	30.7	31.7	32.7	33.7	34.8	35.8	36.8	37.8	38.9	39.9	40.9	42.0		
80	30.0	31.1	32.1	33.1	34.1	35.2	36.2	37.2	38.3	39.3	40.4	41.4	42.4		
85	30.4	31.4	32.5	33.5	34.5	35.6	36.6	37.7	38.7	39.7	40.8	41.8	42.9		
90	30.8	31.8	32.9	33.9	34.9	36.0	37.0	38.1	39.1	40.2	41.2	42.3	43.3		

개 선	<p>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① <u>일 최고 체감온도</u>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p> <p>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p>	<p>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① <u>일 최고 체감온도</u>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p> <p>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p>
-----	---	---

- 따라서, 동 개정안 역시 같은 맥락에서 폭염을 체감온도 기반으로 정의함으로써 기상청의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체제와 동기화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실제 느끼는 더위를 고려한 실질적인 폭염피해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 한편, 폭염저감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별표]의 신설은 현행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것으로 본 조례 제정(2023.10.4.) 당시 누락된 것을 보완하는 사항이며 별다른 문제는 없음.